

7 강사료

가. 경비성격

- 교육과정 운영 등 교직원 직무교육 외래강사의 수당 등

나. 기준액 (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 기준)

1) 강사료

가) 일반 강의 강사수당

구분		지 급 대 상			지급단가(천원)
		공무원	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	사립학교, 언론사 및 기타	
특별 강사	1			○ 해당분야의 권위자로 총장이 인정하는 자	1시간 500 ※상한액1,000
	2	○ 전·현직 장관급 이상, 전·현직 국회의원 ○ 전·현직 서울특별시시장 ○ 전·현직 국립대학 총장(공무원보수규정 별표12의 비고 제1호 다목 적용 받는자)급 ○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강사		○ 전·현직 국립대학법인·사립대학 총장 (국립대학 특별강사2급에 준하는자) ○ 언론사대표 ○ 명망이 높은 문화·예술·종교인 및 학계인사 ○ 그 밖에 위에 준한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강사	1시간 400 초과 강의시 200 ※상한액600
	3	○ 전·현직 차관 ○ 전·현직 국립대학 총장(특별강사 2급에 해당되지않는자) ○ 전·현직 광역 시·도지사 ○ 전·현직 교육감 ○ 판사(14호봉이상),대검검사급 ○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강사	○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이에 준하는 강사	○ 전·현직 국립대학법인·사립대학 총장 (특별강사2급에 해당되지 않는 자) ○ 언론사 임원 ○ 민간 기업 및 단체 대표 ○ 그 밖에 위에 준한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강사	1시간 300 초과 강의시 200 ※상한액600
일반 강사	1	○ 4급 이상 공무원 ○ 장학관(교육연구관) ○ 판사(13호봉이하)·검사 ○ 전·현직 광역의회의원, 기초자치단 체장 및 의원 ○ 국립대학 부교수 이상 ○ 국공립 유·초·중등학교(원)장 ○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강사	○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임원과 이에 준하는 강사	○ 국립대학법인·사립대학 부교수 이상 ○ 문화·예술 등 특별분야의 전문강사 ○ 언론사 직원 ○ 민간 기업 및 단체 임원 ○ 변호사, 변리사, 의사, 공인 회계사, 기술 사 등 자격(면허)증 소지자 ○ 사립 유·초·중등학교(원)장 ○ 해당분야 전문가로 특별강사 2-3급 강사의 보조강사 ○ 그 밖에 위에 준한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강사	1시간 230 초과 강의시 120 ※상한액450
	2	○ 5급 이하 공무원,장학사(교육연구사) ○ 국립대학 조교수 이하 ○ 국공립 유·초·중등학교 교(원)감 이하 ○ 그 밖에 일반강사 1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강사	○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직원과 이에 준하는 강사	○ 국립대학법인·사립대학 조교수 이하 ○ 사립 유·초·중등학교 교(원)감 이하 ○ 민간 기업 및 단체 직원 ○ 그 밖에 일반강사 1급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강사	1시간 120 초과 강의시 100 ※상한액300
	보조	○ 각종 실기실습보조자			시간당 40
	진행강사	○ 연수과정 진행 보조자			시간당 10
외국어 강사	주강의	○ 외국인(원어민), 외국어 교육기관 3년이상			시간당 90
	분임강의	○ 외국인, 외국어 교육기관 3년미만			시간당 50
전산 강사	주강의	○ 전산 강의 및 실기실습			시간당 55
	보조	○ 전산 실기실습 보조자			시간당 33

- ※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「공직자윤리법」 제3조의2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.
- ※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」과 동법 시행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장이 적의조정 할 수 있다.
- ※ 공개강좌 관련 강사료(내부 교직원 강의 포함)는 위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적용하되, 강좌성격을 고려하여 지급기준을 달리할 경우 「부정청탁금지법」에서 정한 기준 내에서 총장이 조정할 수 있다.
- ※ 강사지급 대상별 강사료를 포함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- ※ 대학 소재 지역(광역자치단체)과 인접 지역(광역자치단체)외 지역에서 출강하는 강사의 경우 1시간 초과 시간분의 강사료를 강사료 및 원고료를 포함하여 상한액 범위 내에서 증액해서 줄 수 있다.

나) 퍼실리테이터 강사수당

구분	지 급 대 상			지급단가(천원)
	공무원	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	사립학교, 언론사 및 기타	
퍼실리테이터	1	○ 특별강사 및 일반강사 1급에 해당하는 자		1시간 180 초과시간 100 ※ 한도450
	2	○ 일반강사 2급에 해당하는 자		1시간 100 초과시간 60 ※ 한도300

※ 활동내역 : 분임활동 등에서 지도 조연 등 학습촉진자 역할 수행

2) 강의 시간 산출기준 등

구분	내 용	비 고
강의시간 산 출	○ 1시간 이하 (1시간)	초과시간은 시간당 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 포함
	○ 1시간 초과 ~ 2시간 이하 (2시간)	
	○ 2시간 초과 ~ 3시간 이하 (3시간)	
	○ 3시간 초과 ~ 4시간 이하 (4시간)	
동일강사 중복출강 최초1시간 인정경우	○ 출강일자가 다른 강의 ○ 출강일은 같으나 교육대상이 다른 강의 ○ 출강일과 교육대상은 같으나 교육내용이 다른 강의	

3) 수강인원에 따른 강사료 할증 지급

수강인원	200~300인 미만	300인 이상
할증률	20%	30%

※ 다만 「국가공무원법」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4) 원고료 지급기준(기존 저작물 활용 관련)

구분	지급기준	비 고
지급단가	○ 12,000원 / A4 1면	
지급한도	○ 6면 / 1시간	※과워포인트 작성 경우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 산정(표지, 목차, 참고문헌 제외)
기존원고 사용 경우 중복부분 미 산입 (기준: 최근1년 제출원고)	○ 30%미만 수정시(미수정) : 미지급	※다만, 교육시기 및 교육대상, 교육내용 등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수정에 관계 없이 전체지급가능
	○ 30~70% 미만 수정시(부분수정) : 50%지급	
	○ 70%이상 수정시(전체수정) : 100%지급	

※ 원고료는 **중앙교육연수원 강사선정 및 수당 등 지급 규정** [별표1] 한도액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※ 부교재(활동지, 체크리스트 등 강의를 위해 인쇄·배포한 자료)에 대해서도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5) 기타 교육 관련 수당 지급기준

가) 시험관리비

구 분	단 위	단 가	비고
① 출제비			
객관식	문제당	10,000원	
주관식(논술형)	문제당	45,000원	
주관식(문제상황설정 자료제시형)	문제당	300,000원	
② 채점비			
주관식(논술형)	문제당	3,000원	상한액 1,200,000원
③ 문제 검토비	문제당	15,000원	
④ 문제선정심의회	과목당	45,000원	

나) 자문료

방법	내용	단 위	단 가(천원)	비고
전자우편 등의 서면 자문	교육훈련계획, 정책연구, 교육과정 등	20면 이상	100	분량, 난이도를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%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
		20면 미만	50	

※ A4용지 기준으로 하며,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자료는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면으로 환산

다) 심사료

구분	내용	단 위	단 가(천원)	비고
내용심사	분임활동 보고서 등	1부당	30	분량, 난이도를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%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
발표심사	분임활동 발표 각종 원내 경연대회	1시간당	70	

「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[별표 2] 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

1.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

- 가.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(같은 호 다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같은 호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): 40만원
- 나.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: 100만원
- 나.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, 외국정부, 외국대학, 외국연구기관, 외국학술단체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.

2. 적용기준

- 가.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,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.
- 나.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.
- 다. 제1호가목 및 나목의 상한액에는 강의료, 원고료,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.
- 라. 다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, 숙박비,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,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.

⑧ 감사활동비

가. 경비성격

-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규정에 의한 경비

나. 기준액

- 출장 시 마다 1일 20,000원